

외국어능력향상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09. 3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외국어졸업인증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외국어능력향상위원회(이하'위원회')는 국제어학원장,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교원 중에서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적용대상) 2009학년도 신입생(2011학년도 3학년 편입생)부터 적용한다. 단,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.

제4조(졸업인증기준) ①(전공)별 외국어졸업인증을 위한 기준 점수는 각 단과대학에서 정한다.

②정기토의 외에 국제어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토의도 인정한다.

제5조(시행절차) ①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 초까지 외국어졸업 인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학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외국어졸업인증 신청 기간은 매 학기 초에 공고하며,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것으로 한다.

③1학년 학생 중 졸업인증기준표 기준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1학년 2학기 초 성적표를 제출하고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외국어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.

④외국어졸업인증을 취득한 학생은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에 등재하여 표시한다.

제6조(휴학 및 복학자) 휴학 및 복학자에 대한 졸업인증 기준 적용은 입학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

제7조(복수전공자) 복수전공자의 졸업인증기준은 주전공의 졸업인증기준으로 적용한다.

제8조(졸업인증 미취득자의 처리) ①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 초까지 외국어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학생은 취득 시까지 학년 수료로 처리한다.

② 외국어 졸업인증기준 미달자는 외국어능력향상위원회에서 정하는 교내 어학원 개설별도의 과정을 이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증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, 본 규정의 4조 1항을 준용한다.

제9조(기타) 본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